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99 | September 2022

A blurred background photograph showing a person's hands working on a white computer keyboard.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stack of papers or books on a light-colored wooden desk. The overall atmosphere is professional and focused on tax-related work.

삼정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소득법인세 분야	3
• [심판례] 청구법인이 운영한 화훼공판장과 관련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 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 [심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심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심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 [예규]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거래 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예규]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 [예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 [예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예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재산소비세 분야	11
• [판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판례]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152억 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Contents

지방세 분야

15

- [심판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A법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법인이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신용제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예규] 산업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 취득세 추징 여부

관세 분야

20

- [심판례]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취소)

소득법인세 분야

[심판례] 청구법인이 운영한 화훼공판장과 관련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1광6731, 2022. 8. 9.

- [사안]** 청구법인은 화훼공판장을 운영하면서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지역농협)가 출하한 화훼를 중도매인에게 경매하고 입금받은 거래 대금 중 낙찰금액의 7% 상당의 수수료와 운송비를 공제한 금액을 농민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지급하면서, 화훼경매에 대한 대가인 위탁수수료(7%)에 대해서는 출하농가 및 출하단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중도매인에게 지급받은 경매대금에 대하여는 (종이)계산서를 발급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화훼공판장에서 중도매인에 대하여 발급한 계산서가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 [판단]**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2항("쟁점규정")에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농민 또는 출하단체가 중도매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고, 이 때 계산서는 동법 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계속적으로 화훼공판장을 운영하여 수입이 발생하므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보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2항 제2호 괄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쟁점규정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2015년 5월 발간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라는 책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전자계산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하여 수탁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농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 건에서 농민을 대신하여 거래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화훼 유통질서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이에 따라 고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국기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 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2구5315, 2022. 8. 9.

- [사안]** 청구법인은 ① A사 및 B사로부터 선순위차입금을 이자율 5.1%로 하여 차입함과 동시에 ② 후순위 전환사채(“쟁점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지분율100%)인 甲사가 인수함. 청구법인은 甲사에게 실제 지급한 쟁점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 중 당좌대출이자율(평균 5.37%)을 적용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손금산업 대상 적정이자율은 선순위차입금 이자율(5.1%)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정한 15.2%로 보아야 한다는 최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함. 이에 조세심판원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쟁점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선결정례에서 정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과 같은 시기에 (주)A에서 평가한 신용등급 A+에 해당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에 후순위·기간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이자율(7.392%)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판단]** A사의 신용등급체계가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표의 신용등급체계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처분청에 따르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업종의 기업 중 신용등급이 BBB-인 C사는 2020년 결손금 누적액이 상당한 기업임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연도의 직전년인 2012년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상당한 우량기업인 기업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A+로 산정한 것이 부적정한 등급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18서0672, 2022. 8. 18.

- [사안]** 청구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운용사로서 기관 투자자가 청구법인에게 투자일임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투자자들의 투자일임재산 중 채권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회사와 채권파킹약정을 하였고, 증권회사는 약정에 따라 채권을 매수하여 보관하던 중 금리가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여 증권회사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 손실을 청구법인의 재산으로 보전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증권회사의 손실을 보전함. 금융감독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검사결과, 청구법인이 채권을 파킹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손실을 투자일임재산에 전가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일임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합의금(“쟁점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합의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판단]** 채권파킹거래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채권파킹거래가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노4049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11612 판결로 확정된 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5서5462·2016서1406(병합), 2017. 3. 21.] 및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 2016 2. 5., 법인세제과-623, 2016. 6. 22.)는 불공정 담합행위로 인하여 지급한 화해금·합의금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상대방·목적·효과 등이 벌금·과징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반사회질서 위반에 따른 벌과금과 동일시할 수 없고,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목적으로 지출” 한 것으로 보아 손금성을 인정하였는바, 쟁점합의금은 청구법인이 채권파킹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증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을 고·저가로 매매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금액에 대한 배상금으로, 청구법인이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닌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조치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위 화해금·합의금은 원본손실에 대한 보전성격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 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금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성격 없이 원본손실에 대한 보전성격만을 가진 쟁점합의금보다 반사회적 성격이 강함에도 손금성이 인정된 점,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한 직접 비용일지라도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한 바 있고, 우리 원도 위법소득에 대한 형사추징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위법소득이 추징되는 경우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해당 형사추징금을, 필요경비에서 이에 대응되는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8서3170, 2019. 8. 28.)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채권파킹거래로 인한 손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한 바 있음(기획재정부법인-737, 2017. 5. 31., 사전법령해석법인2016-247, 2017. 6. 5.).

[심판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1중3830, 2022. 8. 11.

[사안] A사(“분할법인”)는 2006~2009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았고, 이후 물적분할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함. 청구법인은 물적분할 당시 조특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2015년에 조특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매출액 단일요건으로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2018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으로 하여 조특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 처분청은 분할법인이 2006~2009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되었으므로 분할법인과는 독립된 법인인 점, 물적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을 분할법인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동일시하여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규정에서 분할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분할로 인해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중소기업의 사업초기(창업)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를 수반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만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반면, 조특법 제2조 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제도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일정 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두 규정 간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이 다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분할을 창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하여 해당 규정을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규정(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까지 확대적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규정상 분할설립을 새로운 설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이었던 청구법인을 2018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TKC 코멘트]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잔존유예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45, 2008. 5. 9., 법인-776, 2010. 8. 20.).

[심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으로 쟁점주식을 소각한 거래에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심사-소득-2021-0064, 2022. 4. 6.

- [사안]** 청구인들은 A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전무이사로, 자신들이 보유하던 A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A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후 청구인들의 각 배우자에게서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전부 소각하였고, 청구인들의 배우자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을 본인계좌에 보유하고 있거나 본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가 청구인들의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 [판단]** 청구인들은 수증자인 배우자들이 자신들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소각하여 실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이 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들을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기법 제14조 제3항이 정하는 우회행위는 사전적으로는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중간에 제3자를 끼워 넣음으로써 두 당사자의 거래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당해 규정이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엄밀한 의미의 거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리 이해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배우자들이 쟁점주식 관련 주주권을 특별히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배우자들이 이익소각 대금을 모두 본인의 대출금 상환 및 본인의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의 진정한 목적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여 배우자들에게 증여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증여(청구인들→배우자들) 및 이익소각(배우자들→A법인)의 거래를 쟁점주식 이익소각(청구인들→A법인) 및 현금증여(청구인들→배우자들)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TKC 코멘트]

-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 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하여, 거주자가 1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의 13 제1항, 2023. 1. 1.부터 시행].

[심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감심2020-1280·1304, 2022. 7. 14.

- [사안]** 청구인은 2014. 4. 9.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쟁점주식거래")하여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
- [판단]**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은 주주별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조세심판원이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쟁점외법인이 쟁점주식거래로 수령한 주식매각대금을 '의제배당'으로 소득구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 개인투자자의 주식매각대금까지 당연히 '의제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쟁점법인은 2013. 10. 7.부터 2014. 4. 30.까지 금융영업 중단 및 주력사업 전환, 자기주식 취득, 감자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 후 2015. 4. 15. 쟁점외법인에 흡수합병 되었는데, 쟁점외법인은 쟁점법인의 모회사로서 이미 2013년 6월 쟁점외법인과 쟁점법인의 법인통합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대외비로 관리되어 청구인 등 개인투자자가 이를 미리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합병 등 종료보고서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감자결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주식매각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당초 처분청도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세무조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을 목표로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쟁점외법인과 달리 청구인은 단순히 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반대주주 주식매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의 외형이 경제적 실질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어 청구인의 쟁점주식거래는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으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TKC 코멘트]

- 위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앞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인 쟁점법인의 모법인이 쟁점주식거래는 자본거래로 그 처분이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므로 악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범인세 환급을 구한 사안에서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2014. 4. 30.)에 쟁점법인은 감자를 결의하였고 자기주식 취득일부터 단기간 내에 자기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19서1399, 2019. 7. 1.).

[예규]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거래 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TKC 코멘트]

-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는 결산상 기간경과분을 손비로 계상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됨(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특례배제규정”).
- 위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1년 초과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차거래라 하더라도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예규] 무증자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 8. 29.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예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2. 8. 22.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예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2022. 8. 24.

조특법 제100조의 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하여 차감할 수 없음.

[예규]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 8. 31.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100조의 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임.

재산소비세 분야

[판례]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 [사안]** 이동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용역 이용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함. 한편 A사는 이동통신단말기(“단말기”)를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에게 판매하였고, 대리점은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판매함. 원고는 2008. 7.부터 2010. 12.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을 일정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하는 이용자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T기본약정형) 또는 매월 단말기 할부금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구입보조금(“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이용자에 대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 [판단]** 구 부가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에누리액’을 드는 한편, 제3항에서는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 등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 부가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보조금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서 원고가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TKC 코멘트]

-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된 타 통신사(KT,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당해 통신사가 단말기를 직접 제조사로부터 구입해 대리점에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만 제공하고 단말기 공급은 계열사가 공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판례]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일부납세자승)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 [사안]** 원고는 A사 및 그 계열사의 임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로 A사 등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함. 피고들은 원고의 차명주식 보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상증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2013. 11. 1부터 2014. 1. 2.까지 차명주주들(“이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1998년 내지 2012년 귀속 증여세(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함(“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차명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3년 내지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각각 부과함(순차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판단]**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2 제1항(“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임(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기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음(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됨(구 국기법 제47조의 2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무신고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은 잘못임.

[TKC 코멘트]

-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2018. 12. 31. 상증세법 개정 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제4조의 2 제2항).

[심판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중3518, 2022. 8. 30.

- [사안]** 청구법인은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7. 27. A시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쟁점협약”)을 체결한 뒤,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쟁점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 퇴비를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바, 그 과정에서 매월 A시로부터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명목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면서, A시장에게 2017년 1월까지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오다가, 2017년 2월부터는 쟁점용역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농업용 기자재(비료 포함) 관련]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처분청은 쟁점용역은 위 조특법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퇴비공급용역’이 아닌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A시장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인바, 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할 수 없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BTO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의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민간투자법 제4조 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협약의 주요내용 및 A시장의 2007. 11. 26. 쟁점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승인의 승인조건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A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거친 행정절차와 청구법인이 갖춘 물적시설(쟁점시설)·기술적 능력은 임의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쟁점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폐기물처리업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허가 등을 둔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세법의 취지에 반하고,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임.

[TKC 코멘트]

- 부가령 제35조 제12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판례]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152억 원)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따라 합병 시 쟁점법인의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합병에 따른 이익증여)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서2951, 2022. 8. 3.

- [사안]** C사는 2017. 11. 10. 자신이 보유한 D사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이익("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인식하였고, A사(지배목적주식 투자사업 및 그 외 사업을 영위)는 2017. 12. 1. C사를 합병("1차 합병", 이하 합병법인을 "1차 합병법인")하였음. '1차 합병법인'의 투자사업부분은 2018. 4. 1. J사에 인적분할합병되었고, '1차 합병법인'은 2018. 8. 1. B사와 합병("쟁점합병")하고, 사명을 A사("쟁점법인")로 변경함. 처분청은 쟁점합병 당시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어 그 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8조에 따른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2018. 8. 1.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
- [판단]**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A사가 C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C사가 이러한 합병 이전에 D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이익을 A사가 합병존속법인으로서 이를 승계받은 것이므로 분할합병의 결과 J사에 귀속되는 쟁점법인의 투자부문(유가증권관리업)에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 및 주식매매대금은 피합병법인인 C사의 과거 D사 주식의 양도거래로 발생한 것으로 합병존속법인인 쟁점법인 사업부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337, 2009. 1. 30.)을 근거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이 J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 가치 평가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은 1차 합병 이전에 발생한 C사의 D사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으로서 이후 1차 합병 과정에서 쟁점법인에게 승계된 것이고, 이 건 분할합병 시 주식처분이 발생한 사업부분이 분할된 것이 아니므로 이처럼 사실관계가 다른 유권해석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합병 시 쟁점유가증권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TKC 코멘트]

- 국세청은 분할 전 처분한 지배목적주식의 처분대금(현금, 미수금)은 지배목적주식의 분할 시 분할되는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 27, 2016. 11. 21.).

[예규]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 8. 3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유한 주식등의 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그 소유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거래정지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지방세 분야

[심판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지2296, 2022. 8. 4.

- [사안] 청구법인은 2017. 12. 31.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지특법 제57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9. 3. 25. 매각하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
- [판단]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취득세 면제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있어 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추징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이므로, 청구법인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의 4 제8항에 따라 고정자산가액(비유동자산)이 아닌 자산가액(유동자산+비유동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한 경우로 추징규정이 완화된 이후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8항에 의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피합병법인 자산가액의 27.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지2316, 2022. 8. 10.

- [사안]** 이 건 투자신탁과 A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보통주식 50%를 각각 취득하였고, 이 건 투자신탁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동 수익증권 중 일부는 A법인이 양수하였음. 청구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쟁점주식") 및 수익증권("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및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이건 주식발행법인의 출자금의 75%를 부담하였고,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75%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
- [판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기법 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100억원 중 5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수익증권은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증권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례] A법인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청구법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지1315, 2022. 8. 18.

- [사안] A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구 지특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50)에 청구법인들 중 지방공사의 출자비율(24.9%)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산되었음.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A법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A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들에게 지기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지분별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안분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
- [판단] 청구법인들은 A법인의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본금 등을 출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특법 제85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 괄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법인에 대한 지방공사의 출자비율만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특법 제85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상법상 주식회사(출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상태에서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가 설립)가 출자한 자본금이 있는 경우 지방공사의 출자금(자본금)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자본금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한 주식회사는 위의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지방공사가 A법인에게 출자한 비율을 구 지특법 제85조의 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과 A법인의 그 청산인들인 청구법인들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예규] 법인이 자동차 판매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신용제공회사와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계약하여 정기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부이자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세제과-2137, 2022. 7. 7.

매도인과 신용제공회사 간에 아무런 약정을 맺지 않고 매수법인이 목적물의 대금을 신용제공회사로부터 차입하여 목적물을 구입한 후 나중에 그 차용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은 신용제공회사와 매수법인 사이의 순수한 소비대차계약으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할 것인바(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1068, 2012. 6. 6.), 할부이자는 매수법인과 자동차 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해당 차량의 가격으로 약정되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매수법인과 금융기관인 신용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출계약에 의해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차량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전대출계약으로 인해 대출금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구고등법원 2013. 11. 1. 선고 2013누247 판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할부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4개월 내지 48개월 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대출금을 재원으로 매도인과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안(조심 2019지3771, 2020. 5. 12.)과 매수인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간접 할부계약을 매도인 및 신용제공자와 체결한 사안(조심 2015지1000, 2016. 2. 4.)에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

[예규] 산업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 취득세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793, 2022. 8. 12.

위탁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위탁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감면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위탁법인은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탁회사가 감면받은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감면목적이나 용도(산업용 건축물 신축용)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신탁회사가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감면 규정에서 감면대상자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이면 족하고,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TKC 코멘트]

- 위 유권해석에서 문제되는 추징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78조 제5항 제1호, "직접사용 요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매각등 요건") 다른 용도로 사용("다른 용도 요건")하는 경우(제2호)'로 구분되는데, 행안부는 본 사안이 직접사용 요건과 다른 용도 요건에 해당하여 추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조세심판원은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도 계속하여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17지0743, 2017. 12. 13., 조심 2017지0423, 2017. 8. 23. 등).

관세 분야

[심판례]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취소)

조심 2022관0069, 2022. 8. 10.

[사안] 청구인은 2019. 4. 2.부터 2019. 12. 27.까지 홍콩에 소재한 쟁점수출자로부터 Cover Glass(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HSK 제7007.11-1000호(관세율 8%) 및 제7007.1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절단,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임.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LCD 모듈 사이즈에 맞게 절단, 면취 가공되어 있고, 수입 후 추가 절단 · 가공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BM 인쇄 영역 내에 쟁점물품의 모델명, 제조일자가 인쇄되어 특정 차량용에 전용 · 사용되도록 설계 · 제조되어 있어 타 제품,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이는 자동차 계기판 구성요소 중 영상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제8528호에 분류되는 모니터를 구성하는 LCD 모듈에 부착됨. 따라서, 청구인은 2021. 7. 21. 및 2021. 7. 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29.90-9990호(양허관세율 0%)의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하면서, 관세 등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 9. 2. 이를 각각 거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5.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쟁점물품은 강화유리에 면취 가공, printing[BM(Black Matrix) 인쇄, 파트 넘버, 제조일자 인쇄], 특수 코팅[AF(Anti Finger), AR(Anti-Reflection), AG(Anti-Glare)] 등의 가공처리를 한 물품으로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구성비에서 AF, AR, AG 역할을 하는 필름 가격이 쟁점물품 원가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일반적인 강화안전유리에 필요한 가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차량용 계기판 LCD 모듈에 대하여 그 밖의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으로 분류하면서 구성요소별 기능에 쟁점물을 별도로 기재하고 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 등이 이루어져 LCD 모듈에 부착되어 기타 모니터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차량용 모니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을 강화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TKC 코멘트]

- 동 사안과 같이 물품의 특성, 가공도, 전용성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품목분류 시 특정 재질의 제품으로 분류되거나 특정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부분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정의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부분품 품목분류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슈로, 품목분류 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됨. 일반적으로 기업이 이러한 불명확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하곤 하는데,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율차이가 있는 경우에 특히 사전에 많은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전용성 등을 다투는 문제는 논리와 입증자료가 중요한데, KPMG는 수많은 경험으로 바탕으로 품목분류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삼정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